

옵티칼 부당해고 항소 기각... 금속노조 “투쟁으로 돌파할 것”

금속노조가 23일 오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사건의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투쟁으로 사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옵티칼 해고 노동자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은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두 회사가 일본 니토덴코의 통제 아래 하나의 생산체제로 운영된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법원은 법인이 다르다는 자본의 말을 인용해 이 집단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자본과 한 통속인 사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부위원장은 “법원은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게 아닌가 싶다”며 “오늘 판결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고, 또 다른 외투자본이 이 나라에서 먹

튀 행각을 벌일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부위원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600일 고공농성을 해제할 때 정부는 함께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평택공장을 한번이라도 방문했느냐, 먹튀방지법을 통과시켰느냐”고 물었다. 이어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옵티칼 투쟁의 불을 다시 지피겠다고 이 자리에서 당당히 밝힌다”며 “이후 모든 책임은 니토덴코와 사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니토덴코가 한국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하며 구미공장 화재 이후에도 647억 원을 수령하는 등 다른 자회사를 통해 이익을

누려왔음에도 공장이 불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사법부는 이런 기업 운영 행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탁 변호사는 “범인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회사를 만들어 놓고 하나를 폐업해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사업은 계속해 이익을 누리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이번 소송의 의의를 묻고 “부족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사법부의 인식”이라며 “노동자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김진아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 지회장은 “사태 이후 평택공장은 계속 채용하면서도 해고 노동자를 전환배치하지 않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회사를 위해 헌신한 노동자들이 무책임한 경영과 화재의 책임을 떠안게 된 현실에 분노를 표하며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현석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오늘 판결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만의 패소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뒤 노동자만 해고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배 지회장은 “지난 3년 8개월 동안 거리와 농성장, 고공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일터를 찾기 위해 싸워왔다”며 “그 시간 동안 생계는 무너졌고 가족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으며 손해배상과 압류까지 당해야 했다”고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단 한 번도 과도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노동법이 정한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해달라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오늘 판결이 저희를 좌절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배 지회장은 조합원들과 논의해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과거 쌍용자동차, KTX 해고 승무원, 파인텍 투쟁 등 사법부가 외면했던 사건들을 결국 투쟁과 연대, 교섭을 통해 해결해 낸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에 좌절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2022년 구미공장 화재를 이유로 노동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단해고를 단행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3년 8개월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0일에 이르는 고공농성도 벌인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구미공장)와 구미공장 물량을 흡수한 한국니토옵티칼(평택공장)을 별개의 법인으로 보고 노동자 측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됐음을 보여주는 조직도·예산서·업무수첩 등이 새 증거로 제출됐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